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5. 25 선고 2021가단53785 판결 [사해행위취소]

---

##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호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장원

피 고 B

소송대리인 C

변 론 종 결 2023. 3. 30.

판 결 선 고 2023. 5. 2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 구 취 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1. 5.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성주등기소

2018. 11. 6. 접수 제15884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이 유

###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대구지방법원 2011가합11744호로 C 등을 상대로 중도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2. 2. 8. 위 법원으로부터, "C은 D에게 18,582,942원을 2012. 3. 15.까지 지급한다. 만일 C이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은 2012. 2. 25. 확정되었다.

D의 C에 대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채권은 2014. 3. 31.을 기준으로 원금 16,600,000원이 남아 있다.

나. D는 대구지방법원 2014하합101호 파산선고 사건에서 파산선고를 받았고 E이 D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는바, 위 파산관재인은 2020. 6. 2. 법원의 허가를 받아 2020. 6. 9. 원고에게, D의 C에 대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채권을 포함한 파산 재산(판결금 채권)을 매각하였고, 원고는 D의 승계인으로서 2020. 7. 2. C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해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다. 한편 C은 2018. 11. 5. 자신의 아들인 피고와, C이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다음 날 피고에게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성주등기소 2018. 11. 6. 접수 제15884호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고, 이 사건 증여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C의 채무초과 상태가 야기되었거나 그 상태가 심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C의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C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C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 나. 판단

### 1) 관련 법리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어야 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는 것인바,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7852 판결 등 참고).

### 2) 구체적인 판단

위 인정사실과 위 각 증거, 갑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이 법원의 F기관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따른 회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인 2018. 11. 5.을 기준으로 채무자 C이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다거나 그 상태가 심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반대사실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C은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도 C이 2014. 6. 13. 480,000,000원에 매수한 대구 달서구 G아파트 H호(이하 'H호 아파트'라 한다)와 상주시 I 답 1,646㎡ 중 10/35 지분(이하 '토지 지분'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고,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채무로서 원금 16,600,000원과 이에 대한 2012. 3. 16.(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지연손해금 기산일)부터 2018. 11. 5.(이 사건 증여계약일)까지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기발생 지연손해금 22,057,534원[=16,600,000원×20%×{6년(2012. 3. 16. ~

2018. 3. 15.)+235일(2018. 3. 16. ~ 2018. 11. 5.)/365일}, 원 미만 버림]의 합계금 38,657,534원(=16,600,000원+22,057,534원)인 채무가 있었다[원고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채무의 원금이 18,582,942원임을 전제로 C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채무 원리금이 57,775,130원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2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여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채무의 원금이 2014. 3. 31.을 기준으로 16,600,000원 남은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런데 원고는 이 법원에 H호 아파트와 토지 지분에 관한 시가감정을 신청하였다가 위 신청이 채택된 후 다시 이를 철회하였고, 달리 위 각 부동산의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시가를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는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위 각 부동산의 시가를 확정할 수 없는 이상, 위 인정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C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거나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오히려 C이 위 H호 아파트를 매수한 가액과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기하여 부담하는 채무액의 차이 등에 비춰 볼 때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제외하고도 C이 보유한 적극재산이 더 많았을 것으로 추정될 뿐이다).

②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C이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원고에 대한 채무 외에도 주식회사 J(이하 'J은행'이라 한다)에 대하여 H호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512,05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받은 465,000,000원의 채무와 같은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153,60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받은 채무 및 같은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20,40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받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주식회사 K(이하 'K저축은행'이라 한다)에 대하여 H호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234,00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받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L카드에 대하여 5,130,000원, M카드에 대하여 10,909,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선고된 사건의 판결금 채무로서 44,960,000원의 채무도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C이 무자력이 되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5호증(H호 아파트에 관한 등기부등본)의 기재, 이 법원의 F기관, J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따른 각 회신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C의 J은행, K저축은행에 대한 위 각 채무와 L카드나 M카드에 대한 채무 및 위 판결금 채무는 모두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이후에 발생한 채무인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C이 부담하고 있었던 채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C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거나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현정

## 별 지 목 록

1. 경상북도 성주군   
대 654㎡
2. 경상북도 성주군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성주군   
위 지상  
목조 토기와지붕 단층 주택 54.21㎡  
토담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 주택 37.02㎡

영광용

